#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91

발의연월일: 2025. 3. 6.

발 의 자: 박지원·조계원·박용갑

민병덕 • 민형배 • 안태준

송재봉 • 윤건영 • 문대림

최민희 · 오세희 · 이광희

소병훈 · 임미애 · 한정애

서미화 • 이개호 • 박홍배

서영교 • 권향엽 • 허 영

의원(2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위원 구성은 국회 선출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 지명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위원회 위원 일부가 국헌을 문란케 한 내란수괴 피의자를 옹호하는 내용을 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하고, 헌법 기관인 헌법재판소를 부숴 없애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 위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막중한 책무에도 불구하고 탄핵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에도 이에 대한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함으로써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과 유사한 정치적 입장에서 군의 인권 문제를 바라볼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위원회 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의 탄핵 소추의 근거를 명시하고 군인권보호관은 위원회 상임위원 중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보장기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 등).

법률 제 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금고"를 "탄핵 또는 금고"로 한다.

제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50조의2 중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
을 "제5조제1항의 상임위원 중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핵 소추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유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군인권보호관의 겸직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고 있는 상임위원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u>금고</u>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	<u> 탄핵 또는 금고</u>		
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			
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			
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5.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의2(군인권보호관) 군인권	제50조의2(군인권보호관)		
보호관은 제5조제2항제2호에	<u>제5조제1항의 상임위</u>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	원 중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		
<u>위원</u> 이 겸직한다.	<u>원</u>		